

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5 - 299호

서계동 11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
우리 구 서계동 116 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(조합설립인가)제5항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, 같은 법 제2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에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2월 28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1. 공람기간: 2025. 2. 28. ~ 2025. 3. 14.(14일 이상)
2. 공람장소
가. 용산구청 7층 재정비사업과(☎ 02-2199-7475)
(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, 7층 재정비사업과)
3. 공람내용: 조합설립(변경)인가 관계서류
4. 의견제출: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
5. 조합설립(변경)인가 신청내용
가. 사업명칭 : 서계동 11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
나. 위 치 :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16번지 일대
다. 구역면적 : 11,490.2㎡
라. 시행자 : 서계동 11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(조합장 : 박규석)
마. 변경인가 신청내용
 - 조합임원 변경 및 대의원 선출
 - 조합 정관변경